

소 장

원 고

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환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-9 한림빌딩 402호

전화 : 02-581-1643 팩스 : 02-581-1642

전자우편 : heyumlaw@gmail.com

피고

방송통신심의위원회

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

시정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

청구취지

1. 피고가 2013. 10. 31. 그루브샤크 웹사이트(<http://www.grooveshark.com>)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(접속차단)를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

1. 처분의 경위 및 시정요구 대상 웹사이트

가. 처분의 경위

피고는 2013. 10. 31. 제7차 통신소위원회에서 미국 소재 소외 이스케이프미디어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그루브샤크 웹사이트(<http://www.grooveshark.com>, 이하 “이 사건 웹사이트”라 합니다)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내용을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고 합니다)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등에 근거하여 시정요구(접속차단)를 결정하였고 (이하 “이 사건 시정요구”이라 합니다), 이를 송달 받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2013. 11. 1. 부터 이 사건 시정요구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. 2013. 11. 14. 이스케이프미디어그룹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. 1. 21.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이 사건 시정요구는 확정되었습니다. (갑 제1호증 “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” 참조)

나. 이 사건 웹사이트의 성격

그루브샤크는 기본적으로 유튜브(<http://www.youtube.com>)와 유사한 성격의 스트리밍 기반 음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루브샤크는 새로운 음원을 창작하거나 녹음된 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웹사이트에 해당 음원을 업로드하고 본인을 비롯한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청취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 현재 그루브샤크와 같은 성격의 음원 공유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하여 사운드클라우드(<http://www.soundcloud.com>), 판도라(<http://www.pandora.com>) 등

매우 다양합니다.

2. 적법요건

(1) 이 사건 시정요구의 처분성

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(대법원 1998.7.10. 선고 96누6202판결 등 참조).

이미 법원은 피고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피고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. (서울행정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참조)

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하여 내린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‘행정처분’에 해당합니다.

(2) 원고적격

가. 제3자의 원고적격

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

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,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·직접적·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.

나. 이 사건 시정요구의 근거 법률의 해석상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도출됩니다.

이 사건 시정요구의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은 “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접속차단 시정명령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동법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은 이용자가 건전하고 안전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동법 제44조의7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만 피고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동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웹사이트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. 동법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이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심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사후 심의에 의한 시정요구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상 정보에 제한 없이 접속이 가능한 것입니다. 요컨대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동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또는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.

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는 “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.”라고 밝히고 있어 인

터넷 이용자의 개별적 의사에 반하여 특정 정보를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는 인터넷 사용자 개인의 '구체적 개별적 권리'를 적시한 것으로,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시정요구 제도를 둔 것은 단순히 '국민생활의 향상'과 '공공복리의 증진'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, 실제 인터넷 이용자가 동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정보 및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다. 이 사건 시정요구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입니다.

이 사건 시정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처분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던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될 것입니다. 이 사건 시정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이용자는 오로지 국내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용자 뿐이기 때문입니다. 이 사건 시정요구 이후에도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이용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. 예컨대 시정요구 대상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해외에 소재해 있어 시정요구 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다투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정요구를 다룰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정요구 이전부터 이 사건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청취하던 자입니다.

원고는 국내 거주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루브샤크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입니다. 이 사건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더라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원고의 경우 적법한

해외 권리자들이 업로드한 음악 등 콘텐츠의 청취를 목적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. 그러던 중 이 사건 시정요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콘텐츠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적법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‘법률상 이익’이라고 할 것입니다.

(3) 제소기간

제3자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제3자는 처분 당시에 그러한 처분이 있었음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. 이 사건 시정요구의 경우 피고가 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내리는 것으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이를 용이하게 알기 어렵습니다. 실제로 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접속차단 시행 여부에 따라 접속차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어 각 이용자 별로 피고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해서 알게되는 시점이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.

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송달된 2013. 11. 1. 이후인 2013. 11. 5. 경에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인 ‘이 사건 시정요구’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시정요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3. 11. 중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. (갑 제2호증 “이 사건 시정요구를 다룬 보도내용” 참조)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2013. 11. 1. 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, 가사 실제 이 사건 시정요구가 송달된 2013. 11. 1. 부터 제소기간을

적용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.

더욱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해서 소외 이스케이프미디어그룹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 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. (서울고등법원 1999. 9. 29. 선고 99누1481 판결 참조) 따라서 이의신청일인 2013. 11. 14. 부터 이의신청 결정일인 2014. 1. 21. 까지는 제소기간이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제소기간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.

3. 처분의 위법성

이 사건 시정요구의 경우 시정요구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피고에 처분 사유를 요청하여 이를 확보한 후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

입증방법

갑 제1호증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

갑 제2호증 이 사건 시정요구를 다룬 보도내용

첨부서류

1. 위 각 입증방법

1. 소장부분

1. 소송위임장

1. 납부서

2014. 2.

위 원고의 소송대리인

변호사 박지환

서울행정법원 귀중